

2014년 1월 18일 경찰승진시험문제 해설
 과목 : 경찰실무종합(경감)

해설 : 송 광 호

◆ 문제 분석표 ◆

구분	전체문제수 (40)	목차	세부문제수	비고 (전체 박스형개수문제 4문제)	특징
총론	20	경찰학서론	1번, 2번		1. 전체의 난이도 : 중하급 2. 총론 : 각론 = 20 : 20 3. 박스형 개수문제 4문제 총론 : 각론 = 1 : 3 4. 조문문제 = 22문제 총론 : 각론 = 9 : 13 5. 실무문제집의 변형문제로만 이루어져 있음. 6. 단답형 문제 : 2문제 7. 설명형 문제가 많아서 단순한 두문자 암기식으로는 고득점하기 어렵다. 8. 실무문제집에서 언급하는 법령, 행정규칙 등을 충실히 공부하여야 한다. 9. 예전의 승진시험, 경간부나 순경시험의 기출문제 설문과 중복되는 설문이 많다. 10. 기출문제와 실무문제집의 반복학습을 필요로 한다. 11. 실무문제집의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지는 않는다.
		경찰철학론	3번, 4번(조문)	조문문제 1개	
		한국경찰사	5번, 6번		
		비교경찰론			
		경찰행정법	조직법 : 7번, 8번(조문), 9번(조문), 10번, 11번(조문), 12번(조문) 작용법 : 13번, 14번(조문)	조문문제 5개	
		경찰관리론, 통제론	15번, 16번(조문), 17번, 18번(조문), 19번(조문), 20번	조문문제 : 3개 18번 : 박스형 개수문제 19번 : 단답형	
각론	20	생활안전론	21번(조문), 22번(조문), 23번(조문), 24번(조문)	조문문제 : 4개 22번 : 박스형 개수문제	
		경찰경비론	26번, 27번(조문)	조문문제 : 1개 26번 : 단답형	
		경찰교통론	28번(조문), 29번(조문), 30번(조문)	조문문제 : 3개 29번 : 박스형 개수문제	
		경찰정보론	31번, 32번(조문), 33번(판례)	판례문제 : 1개 조문문제 : 1개	
		경찰보안론	34번(조문), 35번	조문문제 : 1개 35번 : 박스형 개수문제	
		경찰의사론	36번, 37번(조문), 38번(조문)		
		경찰수사론	25번(조문)	조문문제 : 1개	
		기타	39번(조문), 40번(조문)	조문문제 : 2개	

경찰실무 유료 모의고사 진행에 관한 공지

1. 유료 모의고사를 진행하는 과목

가. 경찰승진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

경찰실무종합 - 경감급, 경위급 대상

경찰실무2 - 경사급, 경장급 대상

경찰실무3 - 경사급, 경장급 대상

경찰학개론 - 경찰간부후보생시험 준비자 대상

나. 일반순경, 경찰행정학과특채를 준비하는 경우 : 경찰학개론, 수사실무

2. (위 1.의 가.)진행과정은 아래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가. 진도별 1차 모의고사 : 1회당 40문항씩 12회

나. 진도별 2차 모의고사 : 1회당 40문항씩 12회

다. 전범위 모의고사 : 1회당 40문항씩 12회

3. (위 1.의 나.)진행과정은 아래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가. 진도별 모의고사 : 1회당 20문항씩 10회

나. 진도별 모의고사 : 1회당 20문항씩 10회

4. 출제범위

가. 기출문제

나. 기출문제의 변형문제

다. 경찰공제회 실무문제집의 변형문제

※ 실무문제집에서 언급하는 법령과 행정규칙 등 관련조문 문제도 출제합니다.

5. 보통 1주당 1회의 모의고사를 다음 카페 "경찰실무교실-송광호"의 해당콘텐츠에 게재합니다.

6. 모의고사의 구성

모의고사는 (1) 문제파일과 (2) 정답 및 해설파일 등 2개로 이루어집니다.

파일은 pdf파일로 올려지므로

pc나 휴대폰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도 있고

출력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휴대폰에는 Adobe Reader를 다운로드하여야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7. 매회 박스형개수 문제

매회 박스형개수 문제는 40문항 기준으로 8개에서 20개로 합니다.

8. 해설

해설부분에는 틀린 설문에 대한 해설을 주로 하나

옳은 설문이라하더라도 난해한 경우나 근거를 알아야 할 경우에는 해설을 붙이며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근거조문을 붙여서 개인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출제된 문제와 관련 조문은 꼭 혼자서라도 찾도록 합니다.

9. 모의고사 실시 시작 : 2014년 3월

※ 유료 모의고사비 결제 방법은 다음 카페 “경찰실무교실-송광호” <http://cafe.daum.net/nolpolice> 에서 소개 합니다.

2014년 1월 18일

“경찰실무교실-송광호”의 송광호 올림.

I.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형성과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대 및 중세 시대 경찰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Politia에서 유래한 것으로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특히 헌법을 지칭하였다.
- ② 17세기에 국가 활동의 확대와 복잡화로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나타나 경찰개념이 외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 ③ 18세기 독일은 계몽철학의 등장으로 법치주의시대가 도래하면서 경찰개념에서 적극적인 복지경찰 분야가 제외되고, 소극적인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되었다.
- ④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제4조 제1항에서 자치체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정답 ④

해설 ④ (틀림) 1884년 지방자치법전 제97조(↔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제4조 제1항(x))에서 자치체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정리 독일과 프랑스에 있어서 소극적 경찰개념의 확립과정
가. 독 일

Johann Stephan Pütter(1776년)	‘복지의 증진은 본래 경찰의 임무가 아니다.’라고 규정
프로이센 일반관트법 (1794년)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이다(제10조 제2항 제17호).”라고 규정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1882년)	법해석을 통하여 경찰의 임무는 위험방지에 한정된다는 사상을 확립시킨 판례 (1) 일반적 수권조항을 근거로 한 경찰권 발동을 긍정함.

		(2)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할 수 있는 분야를 위험방지 분야로 한정함.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1931년)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4조 제1항).”라고 규정 → 경찰의 직무범위를 소극적 목적에 한정하는 경찰개념을 확립한 입법
제2차 대전 이후의 비경찰화	배경	(1) 경찰의 임무가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로 한정되었지만 실제로는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 등 협의의 행정경찰사무가 경찰사무에 포함 (2) 2차대전 중 나치에 의한 경찰권 집중의 심각한 폐해 = 1937년 독일의 나치정권이 각 주에 속해 있던 경찰권을 중앙에 집중하여 국가경찰화하고 보안경찰, 질서경찰 및 돌격대를 합쳐 국가치안본부를 설치·운영하던 폐해 (3) 연합군이 점령정책의 일환으로 시행
	내용	위험방지의 이름하에 행해지던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다른 관청의 사무로 이관하여 질서 행정이라는 분야로 관장케 하는 것
	비경찰화의 대상	협의의 행정경찰사무 : (1) 영업경찰 (2) 건축경찰 (3) 보건경찰 (4) 산림경찰 등

나. 프랑스

죄와형벌법전(1795년)	“경찰은 질서, 자유, 재산 및 개인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제16조)”고 규정 → 경찰의 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
지방자치법전(1884년)	“자치체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제97조).”고 규정
특정	경찰의 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고 있으면서도 위생사무 등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포함하고 있음

2.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 ② 일반행정기관에서도 ‘경찰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때의 ‘경찰기능’은 ‘일반행정기관’이라는 조직적 측면에서 바라본 형식적 경찰개념을 의미한다.
- ③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한 불심검문은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를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경찰상 즉시강제의 권력작용이라는 면에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고, 실정법에서 경찰행정기관에 그 권한을 맡긴 것이란 면에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기도 하다.
- ④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경찰활동으로 그 범위는 각국의 전통이나 현실적 환경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② (틀림) 일반행정기관에서도 ‘경찰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때의 ‘경찰기능’은 ‘일반행정기관’이라는 조직적 측면에서 바라본 **실질적 경찰개념**(↔ 형식적 경찰개념(x))을 의미한다.

정리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구별기준	실정법의 규정여부 → 조직중심	작용의 성질 → 작용중심
경찰의 의미	그 작용의 성질을 불문하고 실정법상 일반경찰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작용을 의미 (1) 보통경찰행정기관이 관장하는 모든 행정작용 (2)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활동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을 근거로 국민에게 명령·강제함으로써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적 작용을 의미 → 공통적인 법적 특성을 표현함(x) → 경찰권의 발동범위와 성질을 표현함(o)
성질	실무상 정립된 경찰개념 → 각국의 전통이나 현실적 환경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시대와 국가에 따라 개념차이가 발생함	(1) 학문적으로 정립된 경찰개념 → 독일행정법학에서 유래 (2) 이른바 ‘일반조항’의 존재를 전제로 경찰관청에 대한 권한의 포괄적 수권과 법치국가적 요청을 조화키 위해 구성된 도구개념
범위	(1) 형식적 의미의 경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경찰법 제3조에 규정된 경찰의 직무범위 (2) 행정경찰의 성질을 가진 것과 사법경찰의 성질을 가진	(1)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의 일부로서, 행정경찰을 의미 (2) 경찰조직이 아닌 다른 국가기관의 권력작용(명령, 강제)을 포함하는 개념

	것을 포함 (3) 법령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속하지 않는 행정작용을 일반 경찰기관이 관장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속함 ↔ 작용의 종류는 불문 ① 권력작용에 속하여도 경찰조직이 직접 담당하지 않으면 경찰이 아님 ② 권력작용과 무관해도 경찰조직이 현실적으로 수행하면 경찰로 간주(예 계몽·지도·봉사·지원, 정보경찰 활동, 대공경찰활동)	→ 일반행정기관에서도 '경찰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때의 '경찰기능'은 '일반행정기관'이라는 조직적 측면에서 바라본 실질적 경찰개념을 의미함. (3) 현실적으로 경찰이 수행하고 있어도 국민에게 명령 혹은 강제하는 것이 아니면 경찰의 개념에서 배제(예 경찰의 서비스활동, 순찰활동, 방법지도, 지리안내 → 실질적의미의 경찰(X)) (4) 사회목적적 행정 중 소극목적행정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나, 국가목적적 행정행위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되지 않음
예	경찰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②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③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④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⑤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⑥ 그 밖의(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1) 건축허가와 같은 건축경찰 (2) 유흥주점의 허가와 같은 위생경찰 (3) 산업경찰 (4) 산림경찰 (5) 철도경찰 (6) 경제경찰

3. 경찰공무원 개개인의 자율적 행동요령을 제정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강령으로 그 형식은 강령·윤리강령·헌장 등 다양하며 훈령·예규의 형태로도 발현되는 것을 경찰강령 또는 경찰윤리강령이라고 하는데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윤리강령은 대외적으로는 서비스 수준의 보장, 국민과의 신뢰관계 형성, 과도한 요구에 대한 책임 제한 등과 같은 기능을 하며, 대내적으로는 경찰공무원 개인적 기준 설정, 경찰조직의 기준 제시, 경찰조직에 대한 소속감 고취 등의 기능을 한다.
- ② 경찰윤리강령은 강제력의 부족, 냉소주의 조장, 최소주의의 위험, 우선순위 미결정 등의 문제점이 있다.
- ③ 우리나라의 경찰윤리강령은 새경찰신조(1966년)→경찰윤리헌장(1980년)→경찰헌장(1991년)→경찰서비스헌장(1998년) 순으로 제정되었다.
- ④ 경찰헌장에는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 5개항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정답 ③

해설 ③ (틀림) 우리나라의 경찰윤리강령은 **경찰윤리헌장**(1966년) → (2) **새경찰신조**(1980년) → (3) 경찰헌장(1991년) → (4) 경찰서비스헌장(1998년) 순으로 제정되었다.

정리 **경찰윤리강령의 대내·외적 기능**

경찰윤리강령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갖는 대외적 기능	㉠ 서비스 수준의 확신 부여 ㉡ 국민과의 공공관계의 개선(국민과의 신뢰관계 형성) ㉢ 과도한 요구에 대한 책임제한 ㉣ 경찰행위에 대한 국민의 평가기준
경찰윤리강령이 조직내부의 관계에서 갖는 대내적 기능	㉠ 조직구성원간의 소속감 고취 ㉡ 경찰공무원 개인적 기준 설정 ㉢ 조직구성원에 대한 교육자료 제공 ㉣ 경찰조직의 기준 제시

정리 **윤리강령이 문제점**

실행가능성의 문제	(1) 경찰강령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위반했을 경우 제재할 방법이 미흡 (2) 지나친 이상 추구의 성격 때문에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음
냉소주의문제	경찰강령은 직원들의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부에서 제정하여 하달되어 냉소주의 야기
최소주의의 위험	경찰관이 최선을 다하여 헌신과 봉사를 하려다가도 경찰강령에 포함된 정도의 수준으로만 근무를 하여 경찰강령이 근무수행의 최소기준이 됨
비진정성의	경찰강령은 경찰관의 도덕적 자각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요구된 것으로서 타율성으로 인해 진정한

조장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윤리적 불감증 야기 가능)
우선순위 미결정	경찰강령이 구체적인 경우 상세하지만 그보다 더 곤란한 현실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먼저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못됨
행위중심적 성격	경찰강령이 무슨 무슨 행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위가전의 의도나 동기를 소홀히 함.

정리 **경찰헌장(1991년 8월 1일)**

구 성	(1) 전문 : 경찰의 전통과 본분 (2) 본문 : 직무와 생활에서의 실천덕목
전 문	경찰의 전통 조국 광복과 함께 태어나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여 오늘의 자유민주사회를 지켜온 대한민국 경찰이다.
	경찰의 본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여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여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영예로운 책임을 지고 있다.
	경찰의 다짐 이에 우리는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굳게 다짐하며 우리가 나아갈 바를 밝혀 스스로 마음에 새기고자 한다.
내 용	(1)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 (2)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 (3)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 (4)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 (5)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

4.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 ②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 친족 포함)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 포함)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④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③
해설

- ① (옳음)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1항
- ② (옳음)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1항
- ③ (틀림)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제1항).
- ④ (옳음)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조문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2013. 12. 9 경찰청 훈령 제721호]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불복종 이유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금전차용(부동산대여) 신고서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5. 부족국가시대의 경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조선시대에는 팔조금법(八條禁法)이라는 형벌법이 있었다.
- ② 삼한은 천군(天君)이 관할하는 소도(蘇塗)라는 벌읍이 있어 죄인이 도망하여도 잡지 못하였다.
- ③ 부족국가시대의 경찰기능은 지배체제 유지를 위하여 군사, 재판, 형집행, 공물확보 등의 기능분화 없이 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 ④ 동예에는 절도범에게 12배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일책십이법(一責十二法)이 있었다.

정답 ④
 해설 ④ (틀림) **고구려와 부여**(↔ 동예(x))는 절도를 범한 자는 12배의 배상을 물리는 일책십이법이 있었다.
 정리 **부족국가시대의 경찰제도**

고조선	형벌법	팔조금법(八條禁法) → 팔조금법 중 살인, 상해, 절도(↔ 손괴(X)) 등 삼조목만 현재 전해 내려오고 있음. (1) 살인 :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죽인다. (2) 상해 : 남에게 상해를 가한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3) 절도 :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남자인 경우 그 집의 노(奴)로, 여자인 경우 비(婢)로 되나, 스스로 속죄하려는 자는 오십만전을 내야 한다.
	특징	(1) 살인죄, 상해죄, 절도 등의 죄목을 정한 형벌법령이 있었다는 것 (2) 당시의 지배세력은 형벌법령을 집행할 어느 정도의 국가체제와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3) 경찰과 재판 및 형집행 등이 분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배세력이 모든 권한을 통합적으로 행사했을 것
한사군	행정체제	군현경찰리의 행정체제 (1) 군(郡) : 문관인 태수와 무관인 도위를 둠 (2) 현(縣) : 현령(만호 이상의 현) 또는 현장(만호 미만의 현)을 두고, 그 밑에 장리인 승과 위, 소리인 두식과 좌사를 둠 → 승과 두식은 문치)를 보좌하고, 위와 좌사는 도적을 잡아 가두는 일을 담당함. (3) 경(卿) : 교화(教化)를 주관하는 삼로와 순찰과 도적을 방지하는 유요를 둠 (4) 정(亭) : 정장을 두어 도둑을 잡게 함. (5) 리(里) : 리에는 이과를 두어 풍속을 담당하게 함.
	경찰기관	위, 유요, 정장이 오늘날의 경찰기능을 담당 (1) 현·경·정의 도적을 검거하는 일을 관장

		(2) 위와 유요 및 정장에게는 활·창·방패·검·갑옷의 오병(五兵)이 주어짐
남북국 시대	부여	(1) 관직 : 마가(馬加)·우가(牛加)·저가(豬加)·구가(狗加) 등의 사출도를 둠 (2) 형벌 :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고, 절도자는 12배로 배상하고(일책십이법), 간음자와 부인으로서 투기한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함 → 형벌이 엄하였음 (3) 제천행사 : 영고(迎鼓) 때에는 형옥을 중단하고 죄인들을 석방함
	고구려	(1) 뇌옥의 부존재 : 뇌옥(갑옥)이 없었음 → 범죄자는 대가(大加)들에 의한 제가평의(諸加評議)의 결정으로 사형에 처하고, 그 처자는 노비로 삼았음 (2) 일책십이법(一責十二法) : 절도범은 일책십이법에 따라 12배의 배상을 하게 함 → 부여로부터 계수
	동예, 옥저	(1) 관제 : 고구려와 예측적 관계로 왕이 없이 거수(渠帥)들이 읍락을 지배 (2) 동예의 책화제도 : 동예에서는 각 읍마다 경계가 설정되어 있어서 서로 경계를 침범하면 노예나 우마(牛馬)로써 배상함 (3) 형벌 :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도둑이 적었음
	삼한	(1) 제정분리 : 부족공동체적 사회로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어, 신지(臣智)·읍차(邑借) 등의 부족의 지배자들에 의해 세속의 질서가 유지됨 (2) 소도(蘇塗) : 벌읍으로서 천관(天官)이라는 신관(神官)이 다스렸으며, 이곳은 죄인이 도망하여도 잡지 못하였음
부족국가 시대의 경찰의 특징		(1) 기능의 미분화 : 지배세력이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사, 재판, 형집행, 공물확보 등의 기능과 분화됨이 없이 통합적으로 작용 (2) 개인의 생명, 재산, 신체의 보호에 관심 : 당시 법조목은 살인과 절도 및 상해에 대하여 엄벌에 처함으로써, 개인의 생명과 재산 및 신체의 보호에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음 (3) 간음과 투기의 엄벌 : 가부장적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음과 투기 등을 강력히 처벌

6. 갑오개혁 및 광무개혁 당시 경찰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894년에 제정된 '경무청관제직장'은 한국경찰 최초의 경찰조직법이라 할 수 있다.
- 일본의 행정경찰규칙(1875년)과 위경죄측결례(1885년)를 혼합하여 만든 '행정경찰장정'에서 영업·시장·회사 및 소방·위생, 결사·집회, 신문잡지·도서 등 광범위한 영역의 사무가 포함되었다.
- 광무개혁에 따라 1900년 중앙관청으로서 경부(警部)가 한성 및 개항시장의 경찰업무와 감옥사무를 통할하였다.
- 1894년 갑오개혁 이후 한성부에 종전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창설하였는데 초기에는 외무아문 소속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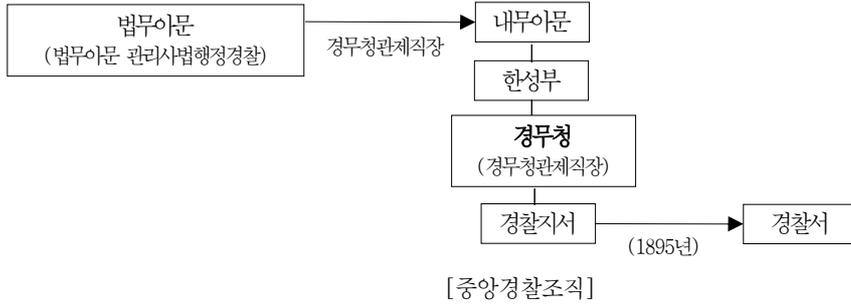
정답 ④
 해설 ④ (틀림) 1894년 갑오개혁 이후 한성부에 종전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창설하였는데 초기에는 **법무아문**(↔ 외무아문(x)) 소속이었다.
 정리 **갑오개혁(1894)**

개요	1894년 6월 27일	일본의 각의 결정(「내정개혁방안강목」) : 조선의 개혁대상의 하나로 경찰 창설을 결정하고, 일본 관리를 통해 조선 정부에 경성 및 중요도시에 2년 이내에 완전한 경찰을 실시하도록 요구
	↓	
	1894년 6월 29일	김홍집 내각의 일본각의 결정 시행 : 각 아문관제에서 처음으로 경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경찰을 법무아문(↔ 외무아문(x))하에 창설할 것을 정함 → 7월 1일 경찰의 소속을 내무아문으로 변경
	↓	
경무청 관제직장	1894년 7월 14일	경무청관제직장과 행정경찰장정 제정 : 「경무청관제직장」과 「행정경찰장정」을 제정하면서 경무청을 창설함
	↓	
	1894년 11월 20일	경찰고문관제도 : 일본은 경찰관의 통일을 요구하고, 그 작업을 담당할 인물로서 무구극조(武久克造) 경시를 경무청의 고문관으로 초빙하도록 요구하고, 조선의 경찰제도를 일본의 제도에 맞추어 정비
경무청 관제직장	성격	경찰조직법 → 한국경찰 최초의 조직법
	경과	일본의 경시청을 모방, 그 계급을 일본의 경시총감, 경시, 경부, 순사를 경무사(경무청의 수장임, ↔ 경무관(x)), 경무관, 총순, 순검으로 바꾸어 사용
	내용	(1) 경무청 신설 : 좌·우 포도청을 합설하여 경무청을 신설 (2) 경무청의 관할 : 경무청을 내무아문에 예속시켜 한성부 내의 일체의 경찰사무를 관장시킴

2014년 1월 18일 경찰승진시험 경찰실무종합(경감)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송광호)

- (3) 경무청의 업무범위 : 경무청에 그 장인 경무사를 두고 경무사로 하여금 한성부의 경찰사무와 감옥사무를 총괄 하고, 범죄인을 체포·수사하여 법사에 이송토록 하는 임무를 부여 → 경찰이 일반행정 또는 군사기능과 분리된 시기
- (4) 경찰지서 설치 : 한성부의 오부자 내에 지금의 경찰서인 경찰지서가 설치되고 경무관을 서장으로 보하였음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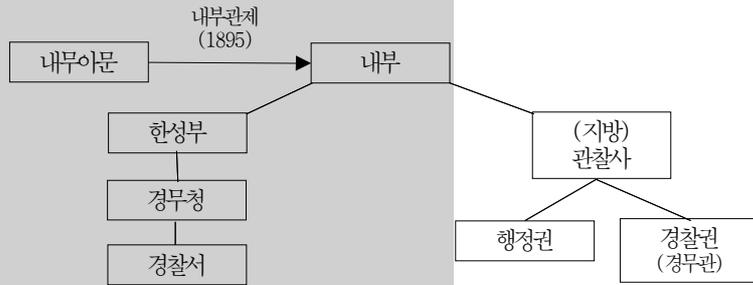


※ [지방경찰조직] 지방의 관찰사 = 행정권 + 경찰권

행정 경찰장정	성격	경찰작용법 → 한국경찰 최초의 작용법
	경과	일본의 1875년 행정경찰규칙과 1885년 위경죄즉결례를 혼합하여 한문으로 옮겨놓은 것
	내용	경무청의 활동범위 규정 : 영업·시장·회사에 관한 사무, 소방, 전염병 예방소독·검역·종두·식물·음수·의약·가축 등 위생에 관한 사무와, 결사·집회·신문잡지·도서에 관한 사무까지 담당 → 경찰의 업무범위를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전근대적인 입법

경찰 체제의 정비	경과	경찰고문관을 조선에 파견하여 조선의 경찰제도를 일본의 제도에 맞추어 정비
	내부관계 제정	(1) 내부대신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정비 (2) 한성부의 경찰지서를 경찰서로 개칭 (3) 궁내경찰서 신설 → 왕궁내외의 경비를 담당
	지방	(1) 지방에 경찰배치 : 처음으로 한성부 이외의 부에 관찰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무관 1인, 경무관보 1인, 총순 2인 이하가 배치 됨 (2) 지방경찰규칙 제정 : 1896년 1월 8일(음력)에 「지방경찰규칙」이 제정되어 지방경찰의 작용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거의 행정경찰장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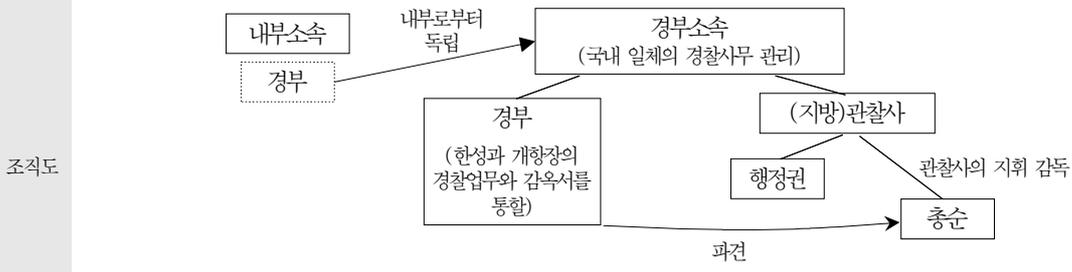


경찰제도 사적 의미	(1) 경찰이라는 용어의 최초 등장 : 갑오개혁으로 종전의 좌·우 포도청을 통합한 경무청이 신설됨으로써 서구식 경찰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경찰(警察)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등장 (2) 근대국가적 경찰체제 : 경찰에 관한 조직법적·작용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비록 서구에서와 같이 법치주의적 사고의 발전에 따른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근대국가적 경찰체제가 갖추어짐 (3) 타율적 개혁 : 경찰의 창설은 조선의 필요성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본의 요구에 의하여 일본이 주도권을 갖고 일본의 경찰제도를 모방한 것임
---------------	--

정리 **경부체제(1900)**

개요	1900년 6월 9일(음력)의 조직 「경부를 설치하는 사건」과 같은 달 12일 칙령 20호 「경부관제」 제정	
내용	(1) 중앙관청으로서의 경부(警部)설치 : 내부(內部) 소속이었던 경찰을 중앙관청으로서의 경부로 독립시킴 (2) 이원적 경찰체제	
	중앙	경부가 한성 및 각 개항시장의 경찰업무와 감옥사무를 담당
	지방	각 관찰부에는 총순(摠巡)을 두어 관찰사를 보좌하여 치안업무를 담당케 함

(3) 경무감독소 : 궁내경찰서와 한성부 내 5개 경찰서, 3개 분서를 지휘



※ 이원적 경찰체제 : 중앙에서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부가 행정을 담당하는 내부와는 독립하였으나, 지방에서는 치안을 담당하는 총순이 관찰사에 소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음으로써, 중앙과 지방간의 체제가 달라짐.

경 과 경부체제로의 전환은 경찰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나, 1년만에 경무청체제로 전환

7.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법규명령이란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추상적인 규정으로서 법규성을 지닌 것을 말한다.
- ② 법규명령의 한계로 행정권에 대한 입법권의 일반적·포괄적 위임은 인정될 수 없고, 국회 전속적 법률사항의 위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전부 하위명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
- ③ 위임명령은 법규명령이고, 집행명령은 행정규칙이다.
- ④ 일반적으로 대내적 구속력 유무에 있어서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은 동일하다.

정답 ③

해설 ③ (틀림)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모두 법규명령이다.

정리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분

구 분	법규명령	행정규칙
형 식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훈령·고시·예규·일일명령
법적근거	(1) 위임명령 : 상위법령의 수권필요 (2) 집행명령 : 수권불필요	수권불필요(행정권의 당연한 권능으로 제정)
권력적 기초	일반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
성 질	법규성 있음(경찰기관과 국민 구속)	법규성 없음(경찰내부적규율에 그침)
구속력	내부적·외부적 구속력(= 양면적 또는 쌍면적 구속력)	원칙적으로 내부적 구속력(= 편면적 구속력)
존재형식	조문형식	조문형식, 구두로도 가능
규정내용	국민의 권리·의무창설	기관의 조직, 재량행사의 지침, 규범해석
효력발생	공포를 요함	공포를 요하지 않음
소 멸	폐지, 부관의 성취, 근거법령의 소멸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유로이 변경·폐지
위반의 효과	위법한 행위로 무효·취소할 수 있음	적법한 행위로 위반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단 징계 사유가 됨
제관규범성	인정됨	인정되지 않음
한 계	법률유보의 원칙·법률우위의 원칙 적용	법률우위의 원칙만 적용

8.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상 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방경찰청장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지구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 파출소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한다.
- ③ 경찰서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④ 지방경찰청장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폐지하거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 한다.
- 정답 ③
- 해설 ① (옳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제10조(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제1항
 ② (옳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제10조(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제2항
 ③ (틀림)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x))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으며,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제10조(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제3항.
 ④ (옳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제10조(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제5항
- 조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개정 제2013. 11. 20 경찰청 훈령 제716호]
- 제10조(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 ① 지방경찰청장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 제4호에 준한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04.12.31>
- ② 지구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 파출소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한다. <개정 '03.12.18, '04.12.31, '08.7.7>
- ③ 지방경찰청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으며,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출장소장은 경위 또는 경사로 한다. <개정 '04.12.31>
- ⑤ 지방경찰청장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폐지하거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6, '04.12.31>

9. 경찰위원회와 치안행정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 ② 경찰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이 분기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 3인 이상 또는 안전행정부장관, 경찰청장이 위원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
- ④ 치안행정협의회는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답 ②
- 해설 ① (옳음) 『경찰법』 제5조(경찰위원회의 설치) 제2항
 ② (틀림) 경찰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분기별 1회(x)) 위원장이 소집한다. 『경찰위원회규정』 제7조(회의) 제2항. 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 이상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위원회규정』 제7조(회의) 제3항. 임시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경찰위원회규정』 제7조(회의) 제4항.

- ③ (옳음) 『경찰법』 제16조(치안행정협의회) 제1항
 ④ (옳음) 『경찰법』 제16조(치안행정협의회) 제2항

- 조문 『경찰법』
- 제5조(경찰위원회의 설치)**
- ① 경찰행정에 관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제16조(치안행정협의회)**
- 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
- ② 치안행정협의회는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조문 『경찰위원회규정』
제7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이상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0. 권한의 대리와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권한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 등에 이양해서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한 행정청은 그 권한을 상실하며, 위임을 받은 기관이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 ②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중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피대리관청의 권한의 전부를 대리할 수 있다.
- ③ 권한의 위임은 법적근거를 요한다.
- ④ 법정대리에는 법정사실의 발생과 함께 법령규정에 따라 당연히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협의의 법정대리'와 법정사실이 발생할 경우 일정한 자의 지정이 있어야 비로소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지정대리'가 있다.

정답 ②

해설 ② (틀림)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중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피대리관청의 권한의 일부(↔ 전부(x))를 대리할 수 있다.

11.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와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 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 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 ③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 ④ 징계 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① (틀림)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와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x))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제1항 1문].

- ② (옳음)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8조(경징계 등의 집행) 제1항
- ③ (옳음)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8조(징계위원회의 회의) 제1항, 제3항
- ④ (옳음)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1조(징계등 의결 기한) 제1항

조문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8조(징계위원회의 회의)

-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 계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에 먼저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이 위원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2.1.26]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의결서등"이라 한다)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 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제2항에 다른 징계등 의결 요구 신청을 받았을 때
- ②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서등을 첨부하여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하여야 한다.
- ④ 경찰기관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을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10.22]

제11조(징계등 의결 기한)

- ①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되었을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등 의결 기한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18조(경징계 등의 집행)

- ①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 ②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집행할 때에는 의결서 사본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 징계등 처분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6]

12. 경찰공무원 등이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청인에게 의견진술기회가 보장되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행한 결정이라도 무효는 아니다.
-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당해 처분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④ 다른 행정심판과 달리 소청심사 없이도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정답 ③
해설

- ① (틀림) 소청인에게 의견진술기회가 보장되며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행한 결정은 무효이다{「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 제2항}.
- ② (틀림)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국가공무원법」 제15조(결정의 효력)}.
- ③ (옳음)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항
- ④ (틀림)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제1항}.

조문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

-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 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3.28>

-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의 심사·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8.3.28, 2011.5.23>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 ③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5.23>
 1.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④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
 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 ⑥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3.22, 2011.5.23>
- ⑦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1.5.23>
- ⑧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 ⑨ 소청의 제기·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제15조(결정의 효력) 제14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13. 경찰책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기 자신 이외의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나 경찰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경찰이 경찰긴급권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한 경우, 긴급한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제3자가 손실을 받더라도 보상할 필요가 없다.
- ④ 다수인의 행위 또는 다수인이 지배하는 물건의 상태로 인하여 하나의 질서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

정답 ④

해설 ① (틀림) 원칙적으로는 경찰책임자에게만 경찰권을 발동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책임이 없는 제3자(비책임자)에 대하여 경찰권이 발동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경찰은 경찰긴급권을 갖는다고 한다.

- ② (틀림) 경찰책임의 원칙은 자연인법인, 고의과실, 위법성 유무, 행위능력·책임능력, 정당권원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경찰위반상태에 대한 경찰책임자에게 경찰권이 발동되는 것을 말한다.
- ③ (틀림) 경찰비책임자(제3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 손실은 특별한 희생이므로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④ (옳음) 단일한 경찰위반상태가 ① 다수의 행위자의 행위 또는 다수인의 물건의 상태로부터 야기된 경우와 ② 행위 책임과 상태책임이 결합되어 발생한 경우의 경찰책임을 다수자책임 또는 혼합책임이라고도 한다. 다수의 행위책임 또는 다수의 상태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누구에 대하여 경찰권을 발동할 것인가는 우선적으로 경찰기관에 있으므로 (선택재량) 경찰기관은 위험방지의 효율성, 원인을 야기한 정도와 비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위해를 가장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에게 행해져야 하고 의무에 합당한 재량행사(의무적합적 선택재량)을 하여야 한다.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경합되어 발생한 경우 통상 행위책임자에 먼저 경찰권발동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경찰실무문제집).

14.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 ② 과태료 부과는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서면 또는 구두로 한다.
- ③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해설

- ②
- ① (옳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제1항
- ② (틀림)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제로(x))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
- ③ (옳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제1항
- ④ (옳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제1항

소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 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 ①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 ③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 제15조(과태료의 시효)**
-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 제17조(과태료의 부과)**
-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5. 경찰조직 편성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명령통일의 원리란 조직목적수행을 위한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하로 나누어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분업의 원리란 조직의 종류와 성질, 업무의 전문화 정도에 따라 기관별·개인별로 업무를 분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 ③ 통솔범위의 원리란 1인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말한다.
- ④ 조정의 원리란 조직구성원간 행동양식을 조정하여 조직목적에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①

해설 ① (틀림) 계층제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x))란 조직목적수행을 위한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하로 나누어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16.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연도 개시 전까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체력검정을 포함한 체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체력검정 미실시자와 최종등급 4등급자에 대하여 개인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체력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체력검정은 '1,000미터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의 측정' 4개 종목으로 한다.
- ④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치안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체력검정을 실시한다. 다만, 만 50세 이상 또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은 자율 실시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① (옳음)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4조(체력관리계획의 수립) 제1항
 ② (옳음)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7조(체력검정 및 체력단련의 실시) 제2항
 ③ (옳음)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10조(체력검정 종목)
 ④ (틀림)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치안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체력검정을 실시한다. 다만, 만 55세 이상 또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자율실시자"라 함)은 자율 실시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9조(체력검정대상자 등) 제1항].

조문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4조(체력관리계획의 수립)

①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연도 개시 전까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체력검정을 포함한 체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체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체력단련의 시간, 장소, 내용
- 2. 체력검정의 일시, 방법 등 제반 절차
- 3. 기타 체력단련 및 체력검정에 필요한 사항

제7조(체력검정 및 체력단련의 실시)

①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체력검정을 매년 10월까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미실시자와 최종등급 4등급자에 대하여 개인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체력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시행규칙」 제9조에 정한 범위안에서 무도훈련시간을 이용 소속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체력단련을 시켜야 한다.

제9조(체력검정대상자 등)

①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치안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체력검정을 실시한다. 다만, 만 55세 이상 또는 경무관이상 경찰공무원(이하 "자율실시자"라 한다)은 자율 실시할 수 있다.

② 체력검정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파견근무 또는 교육훈련 중인 자
- 2.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3. 사고나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체력검정이 불가능한 자
- 4.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인 자
- 5. 그 해에 퇴직이 예정된 자
- 6.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소속 체력관리기관의 장이 검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자

(2011.5. 6 개정)

③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검정제외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조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94조(교체대상차량의 불용처리)

- ① 차량교체를 위한 불용 대상차량은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에 배정되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 경과 여부 등 차량사용기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 ② 사용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주행거리와 차량의 노후상태, 사용부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신중하게 선정한다.
- ③ 단순한 내용연수 경과를 이유로 일괄교체 또는 불용처분하는 것을 지양하고 성능이 양호하여 운행가능한 차량은 교체순위에 불구하고 연장 사용할 수 있다.
- ④ 불용처분된 차량은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별로 실정에 맞게 공개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매각이 불가능한 때에는 폐차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매각을 할 때에는 경찰표시도색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8조(차량의 관리책임)

- ① 차량을 배정 받은 각 경찰기관의 장은 차량에 대한 관리사항을 수시 확인하여 항상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경찰기관의 장은 차량이 책임 있게 관리되도록 차량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차량운행시 책임자는 1차 운전자, 2차 선임탑승자(사용자), 3차 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20조(무기 탄약의 회수 및 보관)

- ①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 1.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 2.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
 - 3. 사의를 표명한 자
- ②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다.
 - 1.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엄세비관하는 자
 - 2. 주벽이 심한 자
 - 3. 변태성벽이 있는 자
 - 4. 가정환경이 불화한 자
 - 5. 기타 경찰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 ③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할 경우
 - 2.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경우
 - 3. 기타 정황을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장관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 ④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정답 ②

해설

- ① (옳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 ② (틀림)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에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20일 이내 (x))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1항.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1조 제2항).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조문은 삭제되었을 주의 바랍니다.
- ③ (옳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④ (옳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 부담) 제1항
 조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에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7조(비용 부담)

-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 3.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8.6]

20.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책임이란 행정조직이 직무를 수행할 때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여 공익·근무규율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 ② 보통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정통제가 행하여진다.
- ③ 행정책임과 행정통제는 민주성 확보와 법치주의 확립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 ④ 경찰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은 경찰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라기 보다 경찰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필요하다.

정답 ④

해설 ④ (틀림) 경찰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은 경찰의 능률성 확보를 위해서라기 보다 경찰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

21. 다음은 파출소장 A가 소속 직원들에게 현행 「경범죄처벌법」에 대하여 교양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법 체포가 가능하다.
- ②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가 분명한 경우 현행법 체포가 불가능하므로, 즉결심판 청구나 통고처분을 해야 한다.
- ③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

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④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정답 ②
해설

① (옳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장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3항 제1호}.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경미사건 특칙에는 적용되지 않고, 같은 법 제211조 제1항에 의해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하다.

② (틀림)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3항 제2호}.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경미사건 특칙에는 적용되지 않고, 같은 법 제211조 제1항에 의해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하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3항의 행위는 법칙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통고처분이 불가하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③ (옳음)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4호

④ (옳음)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2항 제2호

조문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거가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조문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 (빈집 등)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건조물(建造物)·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2. (흉기의 은닉·휴대)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
4. 삭제 <2013.5.22>
5. (시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
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8. (물품강매·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10. (마시는 물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꽂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이나 버린 사람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13. (의식방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관계 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아니하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사람
14. (단체가입 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15. (자연훼손) 공원·명승지·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꽃·나무·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사람
16.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뗏목 등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자동차 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
17. (물길의 흐름 방해) 개천·도랑이나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18. (구걸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19. (불안감 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혐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중·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22. (위험한 불씨 사용)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23.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쓴 사람
24.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여러 사람을 위협에 빠트릴 우려가 있게 한 사람
25.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26.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
27. (무단소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 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를 하기 위하여 켜 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
28.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으면서도 등불을 켜 놓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한 사람
29. (공무원 원조불응) 눈·비·바람·해일·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화재·교통사고·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아니한 사람
30. (거짓 인적사항 사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댄 사람
31. (미신요법) 근거 없이 신기하고 옹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32. (야간통행제한 위반) 전시·사변·천재지변, 그 밖에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사람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34. (지문채취 불응)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 | | |
|---|--|
| <p>(1)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다만, 둘 이상의 업종(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로서 일반게임제공업소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포함되지 아니한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함)</p> <p>(2) <u>사행행위영업</u></p> <p>(3)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업 및 유흥주점업</p> <p>(4) 비디오감상실업(일명 "비디오방") 및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p> <p>(5) 노래연습장업(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함 ↔ 단 청소년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10시까지 출입가능)</p> <p>(6) <u>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u></p> <p>(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함)</p> <p>(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p> <p>(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p> <p>→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p> <p>①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노래·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일 것</p> <p>②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일 것</p> <p>③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중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p> | <p>(1)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 <p>(2) 숙박업(다만, 「관광진흥법」휴양 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은 제외함)</p> <p>(3)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個別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p> <p>(4) 이용업(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한 남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함)</p> <p>(5)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p> <p>(6)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p> <p>(7) 비디오물소극장업</p> <p>(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다만, 유독물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함)</p> <p>→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사용업 중 유독물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을 말함.</p> <p>(9)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p> <p>(10)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p> <p>→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p> <p>①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p> <p>② 외관상 영업행위가 성인·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 대상의 영업을 이루어짐으로써 고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를 요구할 것이 우려되는 영업일 것</p> |
|---|--|

23.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호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입력 대상이다.
-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대상자가 '보호자가 가출 시 동행한 실종아동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 ④ 실종아동등 신고는 전화, 서면, 구술 등의 방법으로 실종아동등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만 접수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 ① (옳음)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7조(정보시스템 입력 대상 및 정보 관리) 제1항 제3호
- ② (옳음)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7조(정보시스템 입력 대상 및 정보 관리) 제2항 제4호
- ③ (옳음)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정의) 제3호
- ④ (틀림) 실종아동등 신고는 **관할에 관계 없이** 실종아동찾기센터,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전화, 서면, 구술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며,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범죄와의 관련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 및

조문

경찰서에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신고 내용을 경찰청장(실종아동찾기센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0조(신고 접수) 제1항).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는실종아동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중 보호자가 찾고 있는 아동등을 말한다.
2. “보호실종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등을 말한다.
3.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4.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4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가출청소년”이라 하고, 그 외는 “가출성인”이라 한다.
5. “치매환자”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6. “발생지”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실종·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를 말하며,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말한다.
7.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제7조(정보시스템 입력 대상 및 정보 관리)

①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종아동등
2. 가출인
3. 보호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하 “보호시설 무연고자”라 한다)
4. 변사자·교통사고 사상자 중 신원불상자(이하 “신원불상자”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1. 민사 문제 해결 목적으로 신고된 사람
2. 범죄혐의를 받고 형사관련 수배된 사람
3. 허위로 신고된 사람
4. 보호자가 가출 시 동행한 실종아동등
5. 그 밖에 신고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명백히 제1항에 따른 입력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람

③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보호자가 삭제를 요구한 경우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1. 발견된 14세 미만 아동 및 가출인 : 수배 해제 후로부터 5년간 보관
2. 발견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 및 치매환자 : 수배 해제 후로부터 10년간 보관
3. 미발견자 : 소재 발견 시까지 보관
4. 보호시설 무연고자, 신원불상자 : 본인 요청 시 및 신원 확인 시 즉시 삭제

④ 경찰관서의 장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실종아동등 및 보호시설 무연고자 자료를 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⑤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1. 찾는실종아동등을 발견한 때
2. 보호실종아동등 또는 보호시설 무연고자의 보호자를 확인한 때
3. 본인 또는 보호자가 공개된 자료의 삭제를 요청하는 때

⑥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신고 내용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관은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접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신고 접수)

① 실종아동등 신고는 관할에 관계 없이 실종아동찾기센터,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전화, 서면, 구술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며,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범죄와의 관련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신고 내용을 경찰청장(실종아동찾기센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경찰청장(실종아동찾기센터)은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신고 접수에 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 관할 경찰관서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는 발생지 관할 경찰관서 등 실종아동등을 신속히 발견할 수 있는 관서로 지정해야 한다.

2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가족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④ 피해자는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다.

- 정답 ③
 해설 ① (틀림)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가정구성원**”에 해당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제2호** 다목】.
 ② (틀림)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제2호**】.
 ③ (옳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신고의무 등) 제1항**
 ④ (틀림)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제2항**】.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1.8.4, 2012.1.17>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학사)의 죄
 -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 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12]

제4조(신고의무 등)

- 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③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12]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전문개정 2011.4.12]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25.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상 피의자 유치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한다.
- ②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 ③ 신체, 의류, 휴대품의 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 등의 검사방법을 교양 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④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하는 것을 “간이검사”라 한다.

정답
해설

- ④
① (옳음)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7조(피의자의 유치 등) 제2항
② (옳음)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7조(피의자의 유치 등) 제1항
③ (옳음)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8조(신체 등의 검사) 제2항
④ (틀림)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하는 것을 “외표검사”(↔ 간이검사(시))라 한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8조(신체 등의 검사) 제4항 제1호. 간이검사는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한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8조(신체 등의 검사) 제4항 제2호.

조문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7조(피의자의 유치 등)

- ①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회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②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를 고려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③ 사건을 담당하는 등 피의자의 입감을 의뢰하는 자(이하 ‘입감의뢰자’라 한다)는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사유, 성격적 특징, 사고우려와 질병유무 등 유치인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피의자입(출)감지회서에 기재하여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알려야 하며,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제1항의 입감지회서 등을 통하여 이를 유치인보호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유치인보호관은 새로 입감한 유치인에 대하여는 유치장내에서의 일과표, 점견, 연락절차, 유치인에 대한 인권보장(별표3)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진정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그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외국인이 제4항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야 하고,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화 통역사를 연계하는 등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신체 등의 검사)

- ① 유치인보호관은 피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유치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유치장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치인의 신체, 의류, 휴대품 및 유치실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신체, 의류, 휴대품(이하 ‘신체 등’이라 한다)의 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 등의 검사방법을 교양 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③ 유치인보호관은 신체 등의 검사를 하기 전에 유치인에게 신체 등의 검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제9조의 위험물 등을 제출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신체 등의 검사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제7조제1항의 피의자입(출)감지회서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유치장내 신체검사실에서 하여야 하며, 그 종류와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표검사 :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한다.
2. 간이검사 :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한다.
3. 정밀검사 :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제1호와 제2호의 신체 등의 검사를 통하여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고 제4항제3호의 정밀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등의 제거가 즉시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검사 후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의한 신체 등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이를 지연하거나 신체에 대한 굴욕감을 주는 언행 등으로 유치인의 고통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근무일지에 기재하고 특이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태를 말한다.

4. "통합방위작전"이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제15조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한다.
5. "지역군사령관"이란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에 있는 군부대의 여단장급(旅團長級) 이상 지휘관 중에서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7.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8. "병종사태"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9. "침투"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을 침범한 상태를 말한다.
10. "도발"이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1. "위협"이란 대한민국을 침투·도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의 침투·도발 능력과 기도(企圖)가 드러난 상태를 말한다.
12. "방호"란 적의 각종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인원·시설 및 장비의 피해를 방지하고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작전 활동을 말한다.
13.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5.21]

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 ①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
- ④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 ⑤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 방호지원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제15조의2에서 이동 <2009.5.21>]

28.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 및 차마의 통행방법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서행하면서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③
해설

- ① (옳음)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5항
- ② (옳음)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제1항
- ③ (틀림)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일단 서행하면서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x)) {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제3항}.
- ④ (옳음)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제4항

조문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 ③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8]

제10조(도로의 횡단)

-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 ④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29. 다음 중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 상 '제2종 보통면허'만을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 |
|--------------------|--------------------|
| ㉠ 승용자동차 | ㉡ 승차정원 12인승의 승합자동차 |
| ㉢ 적재중량 1.5톤의 화물자동차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해설 ③ "㉠, ㉡, ㉣" 3개

"㉠, ㉡, ㉣"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 가능하고,

"㉢" 제1종 보통면허 이상을 가진 사람이 운전 가능하다.

정리 **운전면허의 종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개정 2010. 12. 31])

종별	구분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제1종 면허	대형면허	(1)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2) 긴급자동차 (3)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제외함) (4)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2)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3) 승차정원 12인 이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함) (4)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5)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함) (6)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함)
	소형면허	(1) 3륜화물자동차 (2) 3륜승용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1) 트레일러, 레커 (2)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면허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함) (5)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1) 이륜자동차(측치부를 포함함) (2)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2) 배기량 50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연습면허	제1종 보통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제2종 보통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30. 「교통사고조사규칙」 상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람을 사망하게 한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 ②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고 중, 인피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48조를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 ③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로써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 ④ 1,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물피사고 중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보험 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를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정답 ②

해설

- ① (옳음)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0조(사고처리 기준) 제1항 제1호
- ② (틀림) 인피 뺑소니 사고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교통사고조사규칙」 제20조(사고처리 기준) 제3항 제1호].
- ③ (옳음)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0조(사고처리 기준) 제1항 제3호
- ④ (옳음)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0조(사고처리 기준) 제2항 제2호

조문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0조(사고처리 기준)

- ①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교통사고(이하 "인피사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사람을 사망하게 한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통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
 2.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이하 "부상사고"라 한다)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를 한 때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을 적용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다만, 사고의 원인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적용하여 통고처분 또는 즉결심판 청구
 3. 부상사고로써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교통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
 4. 부상사고로써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라도 교통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조항을 적용하여 불기소의견으로 송치. 다만, 사고의 원인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통고처분 또는 즉결심판 청구
- 가. 교통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나.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하 "중상해"라 한다)에 이르게 된 경우
 다. 보험등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 등의 보험금 등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5.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
- ②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교통사고(이하 "물피사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또는 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의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입력한 후 종결
 2.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보험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를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 다만, 피해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대장에 입력한 후 종결
- ③ 뺑소니 사고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인피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기법"이라 한다) 제5조의3을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
 2. 물피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48조를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
- ④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사상자 구호 등 사후조치는 하였으나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2항 및 「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취운전 중 인피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기법 제5조의11의 규정의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한다.
1. 가해자가 마신 술의 양
 2. 사고발생 경위, 사고위치 및 피해정도
 3. 비정상적 주행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말할 때 혀가 꼬였는지 여부, 횡설수설하는지 여부, 사고 상황을 기억하는지 여부 등 사고 전·후의 운전자 행태
- ⑥ 교통조사관은 부상사고로써 교통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보험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상해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고를 접수한 날부터 2주간 피해자와 손해배상에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한다.
- ⑦ 교통조사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기간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손해배상에 합의한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를 제출받아 교통사고조사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31. 셔먼 켄트(Sherman Kent)는 정보의 사용자가 과거, 현재, 미래의 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정보를 3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중 다음 보기와 가장 관련이 깊은 정보는?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하여 미래의 가능성을 예측한 평가정보로서 정책결정자에게 정책의 결정에 필요한 사전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 | | |
|--------|--------|
| ① 기본정보 | ② 현용정보 |
| ③ 보안정보 | ④ 판단정보 |
- 정답 ④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 ②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 ③ 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금지 통고를 한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로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의 금지 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③ 이의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3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행진시위의 참가자들이 일부 구간에서 감행한 전차선 점거행진, 도로점거 연좌시위 등의 행위는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이상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②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해산명령을 할 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 사유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그 주최 또는 참가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집회·시위가 장차 특정지역에서 개최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행정상 즉시강제인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 허용될 수 없다.
- ④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 ① (옳음)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11.13, 2006도755 판결[일반교통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② (틀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집시법 시행령’이라 한다)이 해산명령을 할 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와 같은 해산명령 제도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이미 진행 중인 집회나 시위를 해산하도록 명하기 위해서는 해산을 명하는 법률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집시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에 의하여 해산 요청과 해산명령 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집시법 시행령 제17조는 해산명령을 하기 전에 먼저 주최자 등에게 종결 선언을 요청한 후 주최자 등이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종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그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 한하여 세 번 이상 자진 해산을 명령한 후 직접 해산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해산명령 전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등의 자발적 종결 선언과 참가자들의 자진 해산을 통하여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를 막고자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자발적인 종결 선언이나 자진 해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하여야만 하는 사유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참가자 등에게 구체적으로 고지될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위 시행령의 규정은 해산 사유가 구체적으로 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해산명령 사유가 구체적으로 고지되어야만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또는 참가자 등이 해산명령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 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만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02.09, 2011도7193 판결[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③ (옳음) 대판 2008.11.13, 2007도9794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공용물건손상]
- ④ (옳음)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04.19,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34. 「국가보안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의 경우 미수·예비·음모를 처벌한다.
- ②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국가보안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 ④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정답
해설

- ①
- ① (틀림)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의 경우 미수·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는다.
- ② (옳음) 「국가보안법」 제16조(형의 감면) 제1호
- ③ (옳음) 「국가보안법」 제18조(참고인의 구인·유치) 제1항
- ④ (옳음) 「국가보안법」 제2조(정의) 제1항

조문

「국가보안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제목개정 1991.5.31]
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p>정적인 시기에 부여된 특수목적 수행하는 간첩망</p> <p>(2) '집'활동형태</p> <p>(3) 현재 대남 간첩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p> <p>(4) 대남 간첩으로 머무르고 있는 동안 간첩 상호간의 종적 또는 정적으로 개별적인 연락을 일체 회피하는 간첩망 형태</p>
	장 점	<p>(1) 동조자를 포섭하지 않고 단독으로 활동하는 점조직</p> <p>(2) 보안이 유지되고 신속한 활동을 할 수 있음</p>
	단 점	<p>활동의 범주가 좁고 공작성도가 비교적 낮음.</p>
피라미드형	개 념	<p>(1) 간첩이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그 밑에 각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간첩망</p> <p>(2) 일망타진 특히, 전체 조직의 노출가능성이 크므로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음.</p> <p>(3) 전선조직을 형성하거나 세포 망을 확장시키는 데는 이 간첩망에 의존하는데 이때에는 주의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p>
	장 점	<p>(1) 활동범위가 넓고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p> <p>(2) 구성원 상호간 최소한의 정체를 보장받을 수 있음</p>
	단 점	<p>(1) 활동이 노출되기 쉬움</p> <p>(2) 일망타진 가능성이 있음</p> <p>(3)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p>
레포형		<p>(1)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간, 행동공작원 상호간에 연락원을 두고 중흥으로 연결하는 방식의 간첩망.</p> <p>(2) '레포'란 연락 또는 연락원을 뜻하는 공산당용어.</p> <p>(3)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음</p>

36.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Red Notice(적색수배서)는 국제체포수배서로서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한다.
- ② Green Notice(녹색수배서)는 상습 국제범죄자의 동향 파악 및 범죄예방을 위해 발행한다.
- ③ Black Notice(흑색수배서)는 새로운 특이 범죄수법을 분석하여 각 회원국에 배포하기 위해 발행한다.
- ④ Yellow Notice(황색수배서)는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의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발행한다.

정답 ③

해설 ③ (틀림) Black Notice(흑색수배서)는 변사자(사망자) 수배서이고, 신원불상 사망자 또는 가명사용 사망자 신원파악 목적으로 시체의 사진과 지문·치아상태문신 등 신체적 특징의복 및 소지품의 상표 등 사망자의 신원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범죄수법수배서(자주색수배서)는 새로운 범죄수법 등을 회원국에 배포, 범죄예방 및 수사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행한다.

정리 국제수배서의 종류

적색수배서	Red Notice : Form 1	<p>(1) 국제체포수배서</p> <p>(2) 일반형범을 위반하여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죄인인도를 목적으로 발행함.</p> <p>(3)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찰이 피수배자를 발견할 때 긴급인도 구속을 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범죄인 인도법에 정하는 구금의 청구·정식인도요구 등의 절차가 진행됨.</p> <p>(4) 적색 수배서에 의한 긴급인도구속은 범인인도전 절차의 핵심을 이룸.</p>
청색수배서	Blue Notice : Form 2	<p>(1) 국제정보조회수배서</p> <p>(2) 피수배자의 신원과 소재확인 목적</p>
녹색수배서	Green Notice : Form 3	<p>(1) 상습국제범죄자 수배서</p> <p>(2) 상습범이거나 재범 우려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하여 범죄 예방 목적으로 발행함.</p> <p>(3) 전과의 정도·범죄종류·국제범죄조직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요한 국제적 범죄자라고 판단 되는 경우에 한해 발행함.</p>
황색수배서	Yellow Notice : Form 4	<p>(1) 가출인 수배서</p> <p>(2) 가출인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신원파악 목적</p>
흑색수배서	Black Notice : Form 5	<p>(1) 변사자(사망자) 수배서</p> <p>(2) 신원불상 사망자 또는 가명사용 사망자 신원파악 목적</p>

		(3) 시체의 사진과 지문·치아상태·문신 등 신체적 특징·의복 및 소지품의 상표 등 사망자의 신원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수록.
장물수배서	Stolen Property Notice	(1) 도난 또는 불법취득 물건·문화재 등 수배서 (2) 상품적 가치 및 문화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발행됨.
범죄수법수배서 (자주색수배서)	Modus Operandi, Purple Notice	새로운 범죄수법 등을 회원국에 배포, 범죄예방 및 수사·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행
보안경고 (오렌지수배서)	Security Alert, Orange Notice	폭발물·테러범(위험인물) 등에 대하여 보안을 경고하기 위하여 발행
INTERPOL-U N수배서	INTERPOL-UN Notice	UN과 INTERPOL이 협력하여 국제테러범 및 테러단체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발행함.

37. 「출입국관리법」 상 외국인 강제퇴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집행한다.
- ③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사법경찰관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수 없다.
- ④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라 보호된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자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한 보호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 ① (옳음) 「출입국관리법」 제47조(조사)
- ② (옳음) 「출입국관리법」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1항
- ③ (틀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사법경찰관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2항).
- ④ (옳음) 「출입국관리법」 제52조(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제1항

조문

「출입국관리법」 제47조(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4]

제52조(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① 제51조에 따라 보호된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자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한 보호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보호할 수 있는 장소는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전문개정 2010.5.14]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① 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집행한다.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사법경찰관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내보이고 지체 없이 그를 제64조에 따른 송환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6조에 따라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송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그를 인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난민법」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0>

1.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2. 「난민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심사가 끝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0.5.14]

38.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이 사법공조를 해주는 만큼 자국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 내에서 공조요청에 응한다는 원칙은 '상호주의 원칙'과 관련이 깊다.
- ② 요청국이 공조에 따라 취득한 증거를 공조요청의 대상이 된 범죄 이외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특정성의 원칙'과 관련이 깊다.
- ③ 「국제형사사법공조법」상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국제형사사법공조법」상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된 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사의 진행, 재판의 계속을 이유로 공조를 연기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③ (옳음)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6조(공조의 제한) = 임의적 공조거절사유
④ (틀림)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係屬)된 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7조(공조의 연기)).

조문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6조(공조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다는 사실이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처벌되거나 형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4.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 5. 이 법에 요청국이 보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09.11.2]

제7조(공조의 연기)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係屬)된 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정리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기본원칙

상호주의	외국이 사법공조를 해주는 만큼 자국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내에서 공조요청에 응하여야 한다는 원칙
쌍방가별성의 원칙	국제형사사법공조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피요청국과 요청국 모두에서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어야 한다는 원칙
특정성의 원칙	요청국이 공조에 의하여 취득한 증거를 공조요청의 대상이 된 범죄 이외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

39.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상 공문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원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를 말하며,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는 공문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③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지시문서”라고 한다.
- ④ 결재권자의 서명란에는 서명날짜를 함께 표시한다.

정답 ①
해설

① (틀림)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원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제1호).

② (옳음)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제2항

③ (옳음)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공문서의 종류) 제2호

④ (옳음)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문서의 결재) 제1항

조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3. "문서과"란 행정기관 내의 공문서를 분류·배부·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신·발신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등 문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과(課)·담당관 등을 말한다.
4. "처리과"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등을 말한다.
5. "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제10조에 따라 결재, 위임전결 또는 대결(代決)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한다)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자이미지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전자문서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8. "행정전자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9. "전자이미지관인"이란 관인의 인영(印影)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
10. "전자문서시스템"이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업무관리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2. "행정정보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수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1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4조(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규문서: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 등에 관한 문서
2. 지시문서: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3. 공고문서: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4. 비치문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등의 문서
5. 민원문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
6. 일반문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서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는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조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문서의 결재)

- ① 결재권자의 서명란에는 서명날짜를 함께 표시한다.
- 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 ③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결(代決)하는 경우에는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되,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서명 또는 "전결"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서명란은 만들지 아니한다.

40.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②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심야라 함은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 ③ 성적 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하여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가족 등에 알려야 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한다.

정답 ②

해설

- ① (옳음)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2조(정의) 제1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제1호
- ② (틀림)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심야라 함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64조(심야 조사 금지) 제1항}.
- ③ (옳음)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76조(성적 소수자 수사)
- ④ (옳음)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14조(설치)

조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의 인권을 말한다.
2. "인권침해"란 경찰관등(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전·의경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수행(수사를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적 약자"라 함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이하 "소년"이라 한다),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타 신체적·경제적·정신적·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4. "성(性)적 소수자"라 함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당사자의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소수인 자를 말한다.
5.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범죄피해자를 말한다.
6. "신고자등"이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2호의 범죄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
7. "조사담당자"라 함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진정의 조사 및 구제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8. "진정인"이라 함은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제3자로서 인권침해를 사유로 경찰청장에게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9. "피진정인"이라 함은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다고 진정인에 의하여 특정된 경찰관 등을 말한다.
10. "내부인권침해"라고 함은 경찰관 등 상호간 관계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제14조(설치)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한다.

제64조(심야 조사 금지)

- ①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심야라 함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 조사를 할 수 있다.
 1. 자정 이후에 조사하지 않으면 피의자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
 2. 사건의 성질상 심야 조사를 하지 않으면 공범자의 검거 및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의 신체, 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야간에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긴급체포 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5. 기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서면상 동의를 받은 경우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자·피해자 등 조사대상자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 그 결과와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자 이외의 경찰관을 참여시켜야 한다.
- ④ 소년·노약자·장애인·외국인인 피의자가 가족 친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심야 조사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외의 피의자가 가족 등의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제76조(성적 소수자 수사) 성적 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하여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가족 등에 알려야 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조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금·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하고 유치(留置)하거나 수용하는 데에 사용하는 시설
 - 다. 군 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 및 헌병대 영창을 포함한다)
 - 라. 외국인 보호소
 - 마. 다수인 보호시설(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용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4. "장애"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5.19]